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위문금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의 달, 설, 추석에 지원되는 위문금의 금액을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변경함(안 제10조제3호 및 제4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의회사무과
- 전화 : 02-3396-8157 FAX: 02)3396-9055
- E-mail : queen@junggu.seoul.kr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30,000원” 을 “50,000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30,000원” 을 “50,000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보훈예우수당 및 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 구청장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위문금 또는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 2. (생 략)</p> <p>3. 보훈의 달에 <u>30,000원</u> 지급</p> <p>4. 설, 추석에 <u>30,000원</u>씩 지급</p>	<p>제10조(보훈예우수당 및 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 -----</p> <p>-----</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50,000원</u> ---</p> <p>4. ----- <u>50,000원</u>-----</p>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8.11.25 조례 제 821호
(일부개정) 2009.05.20 조례 제 854호
(일부개정) 2010.06.23 조례 제 887호
(일부개정) 2013.04.26 조례 제1175호
(일부개정) 2016.07.13 조례 제1323호
(일부개정) 2016.12.28 조례 제1355호
(일부개정) 2017.03.15 조례 제1365호
(일부개정) 2017.11.01 조례 제1394호
(일부개정) 2017.12.27 조례 제1410호
(일부개정) 2018.09.21 조례 제1426호
(일부개정) 2020.01.01 조례 제1499호
(일부개정) 2020.06.10 조례 제150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 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3.1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개정 2016.7.13)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개정 2016.7.13)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개정 2016.7.13)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신설 2013.4.26, 개정 2016.7.13)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신설 2020.6.10)
7. 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개정 2020.6.10)

제4조(책무) 모든 국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 및 보훈 관련 기념일 행사, 구청 주관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여야 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4.26, 2016.7.13)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구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때에 구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등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3. 보훈의 달 및 보훈관련 기념일 등에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개정 2016.7.13)
4.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제7조(보훈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8)

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2. 호국·보훈정신 함양 ·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위로행사(개정 2013.4.26)
3. 지역사회 발전과 단체의 복지향상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4. 보훈의 달에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금의 지원(신설 2016.12.28)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6.7.13)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예산지원을 받은 단체는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주차장·복지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
2. 보건소 등 구가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제10조(보훈예우수당 및 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 구청장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위문금 또는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3, 2016.12.28)

1. 보훈예우수당 : 월 7만원<개정 2013.4.26., 2017.11.1., 2020.1.1.>
2. 유공자 사망위로금 : 200,000원
3. 보훈의 달에 30,000원 지급(신설 2016.12.28)
4. 설, 추석에 30,000원씩 지급(신설 2017.11.1.)

제11조(수당 등 지급대상자) <제목개정 2018.9.21.>

- ① 수당 및 위문금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중구에 계속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로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와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중구에 계속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사망자로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4.26, 2016.7.13, 2018.9.21.)

제12조(수당의 신청) ① 제10조에 의한 수당 또는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7.13)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은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③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동장은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 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제13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의한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검토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수당은 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 2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단,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16.7.13)

제14조(수당지급의 중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다만, 이미 지급된 보훈예우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제15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삭 제> (개정 2017.3.15)

제16조(수급자의 관리) 구청장은 수당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당지급대상자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민간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2009.5.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10조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부칙(2010.6.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복 지원금지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후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부칙(2013.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1)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0호, 2017.12.2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26호, 2018.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99호, 2020.1.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05호,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